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3.

발 의 자 : 양문석 · 전용기 · 진선미
박민규 · 서미화 · 양부남
김동아 · 조계원 · 이춘석
최혁진 · 이광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예술인의 상당수가 공연, 리허설, 촬영 등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자로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규정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. 실제로 2023년에 발생한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등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큼.

이에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고, 예술인을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,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

리 의무를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.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·연구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였음(안 제7조의2 신설 등).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원율”을 “지원 및 안전과 생명권 보호율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“예술 활동”이란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신체적”을 “신체적 안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모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진다.

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등)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·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·연구

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, 예술인 복지 <u>지원을</u>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지원</u> <u>및</u> <u>안전과 생명권 보호를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2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· 4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2의3. “예술 활동”이란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 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) ① (생략)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<u>신체적·정신적</u>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. ③ ·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예술인의 지위와 권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신체적 안전</u> -----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⑤ 모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<u>종사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</u>

<신 설>

제10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~ 10. (생 략)

<신 설>

11. · 12. (생 략)

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
자로서 권리를 가진다.

제7조의2(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
안전관리 의무 등) ① 문화예
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이 신체
적 안전·정신적 안정이 보장
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
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
를 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1
항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을 효
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안전
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재단의 사업) ① -----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
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
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
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·연
구

12. · 13. (현행 제11호 및 제12
호와 같음)

② (생 략)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18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</u> <u>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</u> <u>실시하지 아니한 자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